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129 제안년월일 : 2022년 09월 23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시의원에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).

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헉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수당) <u>② 수당의 종류</u> <u>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</u>	제4조(수당) <u>② 다른 법령에</u> <u>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</u>	제4조(수당) ② (개정안과 같음)
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전한다.	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 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 서 제외한다.	
	1.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 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 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 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 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 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 까지 포함	1, (개정안과 같음)
	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 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 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 한 경우	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 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 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 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 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에서 지급한다.

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참석수당 :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·의결·협의· 자문 등(이하 "심의등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 - 2. 심사수당: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 - 3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
 -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

검토 · 심의한 경우까지 포함

- 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 한다.
-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아 혀 행 제4조(수당)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제4조(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 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 1. 참석수당 :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 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 하여 심의·의결·협의·자문 등(이하 "심의 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 등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 사수당 당 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시의원"이라 2. 심사수당: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<u>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</u>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 한 경우의 참석수당 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 하는 수당 3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 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 전 자료수집·안<u>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.</u>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

한 경우까지 포함

- 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 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.

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
- ③ 수당의 공뉴와 시급액, 시급철사 등에 관 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